

'1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일반공채 · 101경비단 -

형사소송법

스마트경찰학원 안태영 해설

1. 2013년 1차 경찰시험 출제범위

출제영역		출제내용	출제문항수
제1편 서론	형사소송의 기초	헌법규정	1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	수사	고소/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긴급체포/압수·수색·검증3문제/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증거보전)	5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공소제기의 효과(공소시효)	1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소송의 주체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4편 공판	공판절차	공소장변경/증인신문2문제/국민참여재판	4
	증거	탄핵증거	1
	재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집행과 형사보상	상소	상소제기/불이익변경금지	2
	비상구제절차	재심	1
	특별형사절차	즉결심판/배상명령	2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기타(숫자의 합·종합문제)		고소기간/비용보상청구기간/재정신청서송부기간/재정결정기간/공소시효기간/보석취소시환부기간	1

2. 2013년 1차 경찰시험 출제경향분석 및 대책

A. 출제방식

4지선다형 문제로써 옳은 것, 틀린 것 묻는 문제가 14문제이며, 박스형 문제는 6문제이다.

B. 출제내용

- ㉠ 법조문과 판례의 비율은 약 6:4정도 된다.(법조문을 묻는 지문은 57개, 판례를 묻는 지문은 34개)
- ㉡ 소홀하기 쉬운 마지막 부분, 즉 상소·재심·배상명령등에서 출제비중이 높아졌다
- ㉢ 판례는 최근판례 중심으로 중요한 것 위주로 출제되었다.
- ㉣ 대부분 기본적인 사항을 출제했으며 난이도 측면에서 2문제나 3문제 정도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C. 수험대책

- ㉠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만이 출제되지는 않기에 요약서로 공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교과서와 조문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 판례와 조문을 평소에 빈틈없이 차분하게 학습한다. 최근판례와 최근 법령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 ㉢ 평소 주말·월말모의고사에 반드시 참여하며, 기본강의와 판례·문제풀이특강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점검하고 향상킨다.

1. 다음 중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해설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법제308조의2) ② 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 ③ 자백배제법칙 및 자백보강법칙(헌법 제12조 제7항) ④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정답 ①

TIP 기출1번과 동일유형을 이미 주중모의고사에서 2번이나 학습하였다. 아래참조

20121109형소법 주중모의고사 1번문제

1. 다음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

-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④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④형소법 제184조 증거보전청구권의 내용이다.

20120706 형사소송법 주중모의고사 1번문제

1. 헌법이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

-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제243조의2 제1항 ②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③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가 옳은 지문이다. (제243조의2제5항) ④ 준항고(제417조)

정답 ③

3. 고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 고소인이 처와 상간자간의 성관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가 상간자를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으로서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을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④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유추적용된다.

해설 ① 제225조 제1항 ② 대판 2001.10.9. 2001도3106 ③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의 적법성(소극) 및 이 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7462, 판결] ④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도 제233조에서 고발에 대하여 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중략>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정답 ④

4. 다음 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 간통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년이다.
-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① 37 ② 39 ③ 42 ④ 46

해설 ㉠ 6(제230조 제1항), ㉡ 6(제194조의3 제2항), ㉢ 10(제262조 제1항), ㉣ 3(제262조 제2항 본문), ㉤ 7(제249조 제1항 제4호), ㉥ 7(제104조)이 들어갈 숫자이다. 모두 합산하면 39가 된다.

정답 ②

5. 긴급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①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291, 판결]

- ② 사법경찰관은 “30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6항)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④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14조의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결정]

정답 ④

6.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②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①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대판 2009.5.14. 2008도 10914) ② 제216조 제3항 ③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그것이 들어있던 지갑으로서, 피고인이 이른바 전화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긴급체포된 직후 압수되었는바, 그 압수 당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전화사기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7.10. 2008도2245).

④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정답 ③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 ㉡ 동일한 영장으로 별개 사실에 대해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 ㉢ 압수·수색영장은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
-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에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영장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야간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은 옳은 지문이다.

㉠ 검사의 영장청구는 필요하지 않다. ㉡ 동일한 영장으로 별개 사실에 대해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은 불가능하다. ㉢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영장제시는 반드시 사전제시**이며 체포·구속영장집행의 경우처럼 긴급집행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18조) ㉣ 제121조, 제122조 ㉤ 제125조, 제126조 ㉥ 제134조(제133조와 구별요함)

정답 ②

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①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84조 제3항). ② 제184조 제1항 ③ 대판 1988.11.8. 86도1646 ④ 출석거부, 진술거부의 경우에 허용되며 "**다른 진술할 염려**"는 해당하지 않는다.(제221조의 2 제1항)

정답 ①

9.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 ㉤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이 옳은 지문

㉠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판결을 받는 것과 책임조각으로 무

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구별할 것(대판 1999.3.9. 98도4621) ㉠ 제326조 제3호 ㉡ 제249조 제2항 ㉢ 대판 2002.4.12. 2002도 690 ㉣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공소시효중단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④

10. 공소장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에 있어서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②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③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④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를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① 피해자 변경(대판 2002.8.23. 2001도6876)

② 상해의 정도차이(대판 1984.10.23.84도1083)

③ 사실에는 차이가 없고 법적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99.11.26. 99도2651)

④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예비·음모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대판 1999.11.26. 99도2461).

정답 ④

11. 공판절차의 진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② 증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나,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③ 증인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속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1심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해설 ① 제306조 제4항 ② 제159조 제1호 ③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48조). ④ 제92조

정답 ③

12. 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 ㉡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 ㉢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다.
-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이는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 ㉥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이 틀린 지문

㉠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지만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규칙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76조 제4항). ㉢ 제297조의2, 제161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79조 ㉥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 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대판 2010.1.14. 2009도9344). ㉥대판 2000.10.13, 2000도3265

정답 ③

1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은 공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여서 절차는 위법하고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④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 “14일 이내”가 아니라 “7일이내”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③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9.8. 2011도7106)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정답 ②

14. 다음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피고인은 구로동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2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고 신고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다.

- ①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거가 현저한 준헌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①②③④[1]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채취를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
[3]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정답 ①

TIP

20130224 형소법 모의고사 8번 / 2013. 1차 문풀 모의고사 (1회) 14번

8. 다음 중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서는 할 수 없다.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출판내용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압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할 수는 없지만,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③

2013.1차대비 마무리특강 37-39번 (2013. 3. 4일 저녁6시 강의)

37.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소극)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38.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감정에 필요한 처분 및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채취를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39. 의식 잃은 교통사고 음주운전자의 동의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는 혈액채취 후 사후 영장 신청 가능

⇒음주운전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을 잃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할 수는 없지만(대법원의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사후 영장을 통한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의미

15. 탄핵과 탄핵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 ④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①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 증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77조 제1항) ② 증거공통의 원칙이란 증거의 증명력은 그 제출자나 신청자의 입 증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증서의 증거능력이나 증거에 관한 조사절차를 불필요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으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89.10.10. 87도966) ③ 대판 1994.11.11. 94도1159 ④ 대판 2005.8.19. 2005도2617

정답 ①

16. 상소제기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7일이며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일이다.
- ② 상소제기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과잉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③ 상소제기기간은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④ 상소제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상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제358조, 제374조, 제405조 ② 형사소송법(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최종개정 법률 제3955호) 제343조 제2항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결 1995.3.23. 92헌바1) ③ 제66조제1항 ④ 제66조제3항

정답 ②

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 ③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 ④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① 제368조, 제396조제2항 ② 대판 2001.4.24. 2001도872 ③ 대판 2009.12.24. 2009도10754 ④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2011.4.14. 2010도16939).

정답 ④

18.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제출 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 신증거에 의한 재심이유에서 의미하는 증거의 명백성이라 함은 새로운 증거가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백성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변경된 판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 재심이유 중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임이 증명된 때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옳은 지문이다.

㉠ 제432조 ㉡ 대결 1987.2.11. 86모22 ㉢ 대결 2009.7.16. 2005도472 전합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위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중략> (대판 2005.4.14. 2004도1080).

정답 ③

19.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절차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인데, 법정형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단일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즉결심판 대상 사건이 될 수 있다.

- ② 판사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 ③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②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3항) ③ 즉결심판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④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정답 ③

20.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및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에 한하여 반드시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없다.
- ㉦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 ㉧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이 옳은 지문

- ㉠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면소판결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2항).
-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
- ㉦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不服)을 신청하지 못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정답 ②